도시고속도로업무규정

제정 1994.12.31 규정 제181호
전문개정 1999. 8.20 규정 제298호
개정 2001. 4.23 규정 제361호
2002. 7.16 규정 제399호
2004. 7. 5 규정 제474호
2006. 1. 9 규정 제537호
2007. 6.15 규정 제587호
2008.12.11 규정 제619호
2017. 4.26 규정 제891호
2018.10. 2 규정 제94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도시고속도로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1, 2018.10.2.>

제2조(적용범위) 도시고속도로 순찰, 유지관리, 포장관리, 청소·녹지관리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12.1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1, 2018.10.2.>

1. "자동차 전용도로" 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서울특별시장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시고속도로" 라 함은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출입 제한의 기능을 갖추면서 대량의 교통을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높은 설계 기준을 특징으로 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순찰" 이라 함은 도시고속도로상의 교통장애물과 각종 시설물의 이상유무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지 관리" 라 함은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손상부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도로의 부속물" 이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6. "도로시설물"이라 함은 도시고속도로상에 설치된 한강상 교량, 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 일반교량, 지하보 차도, 복개구조물, 언더패스 등을 말한다.
7. "포장관리"라 함은 도로 구성층의 보전과 차량의 쾌적한 주행을 위해서 조성된 도로 포장(아스팔트·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말한다.
8. "도로표지" 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존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의 도로표지규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기타표지를 말한다.
9. "도시고속도로 청소" 라 함은 서울시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의 청소를 위하여 공단에 관리위탁한 도로상의 교통장애물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말한다.
10. "폐기물" 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타이어 등 도로시설물과 도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위적 시설을 제외한 모든 이물질을 말한다.

11. “도시고속도로 녹지” 라 함은 서울시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위탁관리한 도로의 중앙 및 도로측 제방법면의 녹지와 가로수를 말한다.(2001.4.23)
12. “녹지관리” 라 함은 녹지대내에 있는 지피식물, 가로수, 관목, 초화류등의 생육에 필요한 일반적인 관리(풀뽑기, 비료주기, 물주기, 병해충방제 등)와 경관 유지를 위한 관리(풀베기, 가로수 가지치기, 관목전정, 소규모의 수목 및 잔디의 이식 보식, 고사목 제거, 초화류 식재 등)를 말한다.
13. “도로기전설비”라 함은 도시고속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도로조명설비, 배수설비, 환기설비, 소방설비 및 이에 수반되는 기계, 전기, 통신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8.10.2.>
14. “도로관리 주관부서”라 함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고속도로의 순찰, 유지관리, 포장관리, 청소·녹지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8.10.2.>
15. “감독자”라 함은 공단이 유지 및 관리하는 도시고속도로의 공사 등 업무에 대하여 “도로관리 주관부서”로부터 지휘 및 감독의 권한을 받은 공단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8.10.2.>
16. “계약상대방”이라 함은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업무 등과 관련하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10.2.>

제4조(관리범위) 공단이 관리하는 도시고속도로의 범위는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로 한다.(2001.4.23, 2002.7.16)(’06.1.9)

제5조(근무제도) 도로관리 주관부서장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무방법, 휴무제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7.6.15, 2018.10.2.>

제2장 순찰업무

제6조(순찰대의 임무) 순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도로시설물 이상유무 점검
2. 교통사고현장 안전 조치(개정2001.4.23)
3. 도로상 교통장애물 제거 및 손궤자 조사
4. 도로 내 공사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5.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잡상인 계도
6. 고장차량편의 및 교통방송정보 제공

제7조(순찰점검의 종류) 순찰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일순찰 : 일상적인 순찰대 순찰, 점검
2. 긴급순찰 : 재해발생 또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의한 순찰로서 긴급복구 대책 마련을 위하여 실시

제8조(순찰업무 범위 및 방법) 순찰업무 범위 및 순찰방법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수행한다.

제8조의2(보고 및 통보) ① 순찰대는 순찰 중 주요사항 적출시 지급장비(무전기, 핸드폰, 기타)로 우선 보고조치하여야 하며 보고의 요령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8.10.2.>
1. 일상보고 : 상황실로 보고 및 근무종료후 일지에 기록유지 보고 한다.

2. 긴급보고 : 상황실, 해당 관리청에 직접보고 및 조치하고 일지에 기록 유지 보고 한다.

②상황실 근무자는 순찰대원의 순찰결과 주요적출사항에 대해 해당관리청에 서면, 팩스,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순찰대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 순찰결과 및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 서울시 또는 도로관리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2002.7.16 본조신설) <개정 2018.10.2.>

제3장 도시고속도로 관리업무 <개정 2018.10.2.>

제9조(업무범위) ①공단이 수행하는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18.10.2.>

1. 도로부속 시설물의 유지관리
2. 도로표지 관리 (2001.4.23, 2002.7.16)
3. 도로시설물 관리(본호개정 '07.6.15)
4. 도로기전설비 관리(본호개정 '07.6.15)
5. 포장관리(신설 2008.12.11)
6. 청소
7. 녹지관리

제10조(파손시설 정비) 교통사고 등의 인위적 파손시설, 유관기관의 환경순찰사항, 시민제보, 현장감독 등이 현장점검시 발견한 파손시설등은 지체없이 보수작업을 시행한다.
(2002.7.16 본조개정)

제11조(노후시설 정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계절적 현상 등에 따른 재해 예방 또는 도로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일체의 보수작업을 시행한다.

제12조(일상유지관리) 도로기능유지를 위한 작업과 시설물 등의 수명연장을 위한 예방 조치를 목적으로 일상유지관리를 시행한다.

제13조(청소·녹지관리 방법) 공단이 수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청소 및 녹지대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방법 및 횟수 등은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별도 지침에 의거 수행한다.
2. 녹지관리 작업은 필요에 따라 도급 및 직영관리를 병행 시행하고 도급시에는 감독자를 두어 관리한다.

제14조(점검업무) 도로기능의 이상유무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4. 7. 5)

1. 일상점검 : 순찰대원의 일일순찰점검 및 공사감독자 점검
2.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부속물에 대하여 종합점검
3. 특별점검 : 도로기능과 관련한 재해, 민원,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항 발생시 점검

제15조(사업계획의 수립) 공단은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부속물의 유지관리, 청소·녹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07.6.15, 2018.10.2.>

제16조(유지관리 관계서류 비치) 유지관리, 청소·녹지관리에 따른 관련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공단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17조 삭제<2018.10.2.>

제18조(유지관리 시행방법) 유지관리의 정비는 작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년간 단가계약에 의한 도급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유지관리 작업시간) 유지관리 작업시간은 주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 야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하되 교통혼잡 및 긴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002.7.16 본조개정)

제20조(하자보수) 도로시설개량, 유지보수공사 등 모든 도급발주 시행공사의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도급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하자 작업통보) ①하자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도급자에게 하자보수 작업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고도 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하자보수 시행에 관한 제반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조치한다.

제22조(하자 작업감독 및 보고) 도급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한 때에는 감독원을 임명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3조(하자 응급조치) 하자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교통상 지장과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한 응급보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긴급보수를 행하고 도급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한다.(2002.7.16 본조개정)

부 칙('99.8.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7.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도로관리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12.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10.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